
 <p>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p> <p>중산층 주거혁신 <b>NEW STAY</b> 정책</p>	<b>보도참고자료</b>		 <p>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p>	
	배포일시	2015. 4. 25(토) 총6매(본문2, 붙임4)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복지기획과 과장 이익진, 주거급여팀장 나기호, 사무관 문기성, 주무관 이화섭</li> <li>☎ (044)201-4740, 3359, 3358, 3352</li> </ul>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최대 4만원까지 인상

- 개편 주거급여, 올 7월부터 시행 -

◆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4.25일 15:00, 복지부장관주재)에서 의결한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중 “주거급여” 관련 세부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15.7월부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3%이하를 대상으로 임차료나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 '최저생계비'이하 일괄 지급 → 급여별로 중위소득에 따라 선정기준 다양화

□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개편 급여체계에 적용할 '15년도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을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구 기준 182만원(중위소득 422만원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 직계혈족 배우자 제외)】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에 동일한 기준 적용

○ 주거급여 보장수준은 임차료로 지원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이며, 주택개량의 경우 주택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이다.

- \* (임차가구) 소득수준, 임차료 부담 등에 따라 기준임대료 상한 임차료 지급  
- 소득이 생계급여기준 보다 작으면, 기준(또는 실제)임대료 전액 지급,  
소득이 생계급여기준 보다 크면, 기준(또는 실제)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지급
-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 주택수선 실시  
- 보수범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350만원 · 650만원 · 950만원

□ 특히 임차료 부분의 보장수준 결정에 있어, 기존 개편방안\*에 비해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반영해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사회보장위원회(총리주재, '13.9월)에서 개편 주거급여 시행방안 마련

○ 우선, 임차료 지급의 상한인 기준임대료를 당초보다 1~4만원 상향 조정하여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간 차이를 최소화하였다.

- 1급지(서울)는 1인가구 17만원을 19만원으로, 3인가구 24만원을 26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각 2만원씩 인상하였으며, 4급지는 가구원수에 따라 3~4만원 인상하는 등 최근의 전월세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하였다.

< 기준임대료 개선 >

(단위: 만원/월)

구 분	종전 기준임대료('13.9월)				개선 기준임대료('15.7월 시행)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외)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외)
1인	17	15	12	10	19	17	14	13
2인	20	17	14	11	22	19	15	14
3인	24	21	17	13	26	23	18	17
4인	28	24	19	15	30	27	21	19
5인	29	25	20	16	31	28	22	20
6인	34	29	24	19	36	33	25	23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또한, 소득이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28%, 4인기준 118만원)보다 높은 수급자\*에 적용하는 자기부담률을 인하(50→30%)하여 자기부담을 줄이고 실제 지급액이 늘어나도록 하였다.

\* 급여=기준임대료-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자기부담률×(소득-생계급여기준)

□ 개편 주거급여는 6월부터 신규신청을 받아 7월중 최초지급될 예정이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7월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4월중에 주거급여 시행 세부절차 규정(국토부 고시)과 지자체 주거급여 업무수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5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에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공개정보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문기성 사무관(☎ 044-201-474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 참고1

### 주거급여(임차가구) 계산

- (급여 산정방식) 소득수준, 임차료 부담 등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
  - 소득이 생계급여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을 전액 지급
  - 소득이 생계급여기준을 초과하면,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하고 지급

- $\text{소득인정액} \leq \text{생계급여기준금액}$  :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전액 지원
- $\text{소득인정액} > \text{생계급여기준금액}$  :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률 0.3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금액)

### □ (기준임대료, 중위소득 등)

< 기준임대료(단위: 만원/월) >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1인	19	17	14	13
2인	22	19	15	14
3인	26	23	18	17
4인	30	27	21	19
5인	31	28	22	20
6인	36	33	25	23

< 중위소득, 생계급여선정기준(단위: 만원/월) >

'15년 중위소득(4인 가구)	422
중위소득 43%	182
생계급여선정기준(중위 28%)	118

### □ (급여계산 예시)

#### ①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5만원인 A씨(4인가구)

- (~'15.6월) 11만원 =  $[134(\text{현금급여선정기준, 중위}33\%) - 80(\text{소득인정액})] \times \text{약}22\%$   
(주거급여비율)
- ('15.7월~) 30만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 이하이고, 실제임차료(35만원)가 기준임대료(30만원)보다 많으므로 기준임대료 지급

#### ② 경기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60만원, 월세 25만원인 B씨(4인가구)

- (~'15.6월) 16만원 =  $(134 - 60) \times \text{약}22\%$
- ('15.7월~) 25만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 이하이고, 실제임차료(25만원)가 기준임대료(27만원)보다 적으므로 실제임차료 지급

1. 추진배경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 “All or Nothing” 문제를 해소하여 **탈수급을 유도**하고, **지원대상 · 수준을 확대**하는 개편방안 발표(‘13.9월, 총리주재 사회보장위원회)
    - \*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 (생계) 중위소득의 30%, (주거) 43% (의료) 40%, (교육) 50%
- < 개편 전 · 후 비교, ‘14년 4인가구 기준 >



- 「주거급여법」 제정(‘13.12월, 국토부) 및 「기초생활보장법」(‘14.12월, 복지부) 개정으로 ‘15.7월부터 국토부에서 개편 제도 시행 확정

2. 개편 주거급여 내용

◆ 대상가구의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의 ‘생계보전형 주거급여’를 ‘실질적 주거지원 제도’로 전환

- (대상가구 확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
  - \* 중위소득의 33% → 43%로 확대
- (주거급여 내실화)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에 따라 지원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에 따라 지급
    - \*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임대료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량 지원
- (개편효과) 대상가구 확대 (70만→97만) 및 급여액 증가 (9→11만원)

참고3

주거급여 개편 전후 비교

구분	개편 전 ('14년)	개편 후
근거법	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70만 가구	97만 가구 (27만 가구 증가 추정)
지원기준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2%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좌 동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강화
소요 예산	7,285억원	약 1조원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	9만원	약 11만원
전달체계	지자체	좌 동 (주택조사는 LH에 의뢰)

□ 선정기준

- 주거급여법 제5조(15.7월 시행)에 수급권자의 범위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서, 중위소득 43%이하인 사람으로 명시

- \* 주거급여법 제2조(정의)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 주거급여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최저보장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토부 고시로 주거급여에 대한 최저보장수준 규정(15.3.18까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 \* 주거급여법 제7조(임차료의 지급)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료의 지급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가구규모, 「주택법」 제5조의2의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 \* 주거급여법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②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4조(최저보장수준) ①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으로 한다.